

군산시 공고 제2015 - 1호

군산시 장애인 콜택시 관리·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1월 2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장애인 콜택시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운행하는 장애인콜택시의 법정무대수 확충에 따른 장애인콜택시 이용 대상자의 범위 조정
- 나.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들의 편의 제공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 확대 및 권익 보호

2. 주요내용

- 가. 장애인 콜택시 이용 가능 대상자 범위 확대(안 제5조)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급 또는 2급 장애인인 중 “휠체어이용자”에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경우” 로 한다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규정 신설

3. 의견제출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5년 1월 22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교통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73-703 군산시 시청로 8번 (조춘동 888번지)

군산시청 교통행정과(전화 : 454-3785, FAX : 454-3769,

전자우편 : power2177@korea.kr)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교통행정과 장애인콜택시담당자 (전화 454-378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 법 예 고 사 항 에 대 한 의 견 서

조 례 명 : 군산시 장애인 콜택시 관리·운영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 대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 장애인콜택시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장애인콜택시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휠체어이용자”를 “버스등의 이용이 어려운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경우
- 3.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과 보호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자)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제5조(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자) ----- -----.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 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서 <u>휠 체어이용자</u>	1. ----- ----- ----- <u>버스등의 이용 이 어려운 경우</u>
2. <u>제1호의 장애인을 동반하는 가족과 보호자</u>	2. <u>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 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 의 이용이 어려운 경우</u>
<신 설>	3. <u>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해당 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 족과 보호자</u>

군산시 공고 제2015 - 3호

공 고

군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1월 2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안

1. 제안이유

- 정부방침에 따라 단계적으로 RFID 또는 칩방식 등의 음식물폐기물 종량제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을 버린 만큼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공동주택 RFID 기반 음식물류폐기물 개별계량 종량제방식 시행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kg당 수수료의 부과 금액 규정 신설
- 2007.1.30일자 동규칙 일부개정(규칙383호)으로 삭제된 조문과 관련된 별지 1호서식 ~ 3호서식을 삭제

2.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관련조항
<p>공동주택 RFID기반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 부과 수수료 기준 마련</p>	<p>▶ 공동주택 RFID기반 음식물류폐기물 종량기 부과 수수료 신설 (별표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FID기반 음식물폐기물 종량기 부과 수수료 : kg 당 50원 - 수수료 산정기준은 무게단위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기존 부피단위 종량제 수수료(납부침)에 부피환산계수를 적용하여 산정 - 산출식 : 40원/L ÷ 0.8kg/L = 50원/kg ⇒ 현재 납부침에 의한 수수료 : L당 40원 ⇒ 부피환산계수 : 1L = 0.8kg 	<p>제4조 별표2</p>
<p>폐지 조문 관련 별지 삭제</p>	<p>▶ 폐지된 조문과 관련한 별지 삭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삭제대상 : 별지1호 서식 ~ 3호 서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지1호서식 : 음식물류폐기물수집연차대수료 위탁장수 협약서 ■ 별지2호서식 : 납입고지서 ■ 별지3호서식 : 독촉고지서 ※ 일부개정 2007.1.30 규척383호 : 관련 조문 삭제(제4조~제6조)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5년 1월 22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자원순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 제출할 곳
 - 우)573-730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자원순환과(☎ 454-3462, FAX 452-8166)
- 의견제출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컴퓨터통신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자원순환과 재활용계(☎063-454-3462)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규칙 제 호

군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안

군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따른 별표2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칩에 의한 수수료”를 “음식물
류 폐기물 납부칩 등에 의한 수수료”로 한다.

제4조에 따른 별표2 규정에 “2. RFID기반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장비(공동
주택) : kg 당 50원”을 신설한다.

별지1호 서식, 별지2호 서식, 별지3호 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 (생략)		제1조 (현행과 같음)																															
제2조 (생략)		제2조 (현행과 같음)																															
제3조 (생략)		제3조 (현행과 같음)																															
제4조 (생략)		제4조 (현행과 같음)																															
제5조 (생략)		제5조 (현행과 같음)																															
제6조 (생략)		제6조 (현행과 같음)																															
별지1 (생략)		별지1 (현행과 같음)																															
별표1 (생략)		별표1 (현행과 같음)																															
별표2	음식물류폐기물 납부칩에 의한 수수료 (단위:원)	별표2	음식물류폐기물 납부칩 등에 의한 수수료 1. 납부칩 (현행과 같음)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판매 단위</th> <th>용기 규격</th> <th>공급액</th> <th>판매 이윤 (10%)</th> <th>판매 가격</th> </tr> </thead> <tbody> <tr> <td>일반 주택</td> <td>1회용</td> <td>5L</td> <td>180</td> <td>20</td> <td>200</td> </tr> <tr> <td rowspan="2">음식점</td> <td rowspan="2">1회용</td> <td>20L</td> <td>720</td> <td>80</td> <td>800</td> </tr> <tr> <td>120L</td> <td>4,320</td> <td>480</td> <td>4,800</td> </tr> <tr> <td>공동 주택</td> <td>1회용</td> <td>120L</td> <td>4320</td> <td>480</td> <td>4,800</td> </tr> </tbody> </table>	구분	판매 단위	용기 규격	공급액	판매 이윤 (10%)	판매 가격	일반 주택	1회용	5L	180	20	200	음식점	1회용	20L	720	80	800	120L	4,320	480	4,800	공동 주택	1회용	120L	4320	480	4,800				
구분	판매 단위	용기 규격	공급액	판매 이윤 (10%)	판매 가격																												
일반 주택	1회용	5L	180	20	200																												
음식점	1회용	20L	720	80	800																												
		120L	4,320	480	4,800																												
공동 주택	1회용	120L	4320	480	4,800																												
	<신 설>		2. RFID기반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장비(공동주택) : kg 당 50원																														
별표3 (생략)		별표3 (현행과 같음)																															
별지1호서식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처리수수료 위탁장수 협약서	(삭제)																															
별지2호서식	납입고지서	(삭제)																															
별지3호서식	독촉고지서	(삭제)																															

군산시 공고 제2015-4호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1월 2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군산기항 국제선 교통편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시에 유치하는 경우에 유치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 관광목적이 아닌 국제선 교통편으로 경유만 하는 경우에도 유치지원금을 신청하는 사례가 있어, 시행규칙에 지원신청 조건을 명확히 하여 조례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군산기항 국제선 교통편 외국인 관광객 유치 여행사 지원조건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5조)

개 정 전	개 정 후
▶ 여행사 관광상품으로 유치한 외국인 관광객	▶ 여행사 관광상품으로 유치한 외국인 관광객 ▶ <u>관내 음식점을 1회이상 이용하고</u> <u>유료관광지 1개소 이상 관광</u>

3. 의견제출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5년 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군산시장(참조 : 관광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장소 : 우)573-703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군산시청 관광진흥과(T.063-454-3334, F.063-454-3329)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군산시 홈페이지 등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관광진흥과 담당자 최대진 (063-454-333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관광진흥에관한지원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지원조건) ② 조례 제12조제1항제3호에 의한 지원은 관내 음식점을 1회 이상 이용하고 유료관광지 1개소 이상을 관광하는 여행사 관광상품으로 유치한 외국인 관광객이 해당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생 략)</p> <p>① (생 략)</p> <p>② <u>조례 제12조제1항제3호에 의한 지원은 여행사 관광상품으로 유치한 외국인 관광객이 해당된다.</u></p>	<p>제5조(현행과 같음)</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u>조례 제12조제1항제3호에 의한 지원은 관내 음식점을 1회 이상 이용하고 유료관광지 1개소 이상을 관광하는 여행사 관광상품으로 유치한 외국인 관광객이 해당된다.</u></p>

군산시 공고 제2015 - 6호

군산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군산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1월 2일

군 산 시 장

1. 제정이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 【허가의 기준】에 규정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 등에 대하여 세부적인 기준을 조례로 정하여 사업의 영위에 따른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의 근거 및 목적(안 제1조)
- 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다. 조례의 적용범위 및 세부 허가기준 (안 제3조 및 제4조)

1.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지역경제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라. 의견 제출처 : 군산시청 지역경제과(☎063-454-2713, FAX 454-2659)
【우 573-703/ 전라북도 군산시 시청로 17】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군산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군산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용기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설치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말한다.
2. "도로"란 도로법 제8조에 규정된 도로법상 도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3조에 따른 신규허가나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제4조(허가기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충전사업의 영업소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허가 및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별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 등(제4조 관련)

사업의 종류	허 가 기 준	
액 화 석 유 가 스 충 전 사 업	자격기준	1. 대표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6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 중 1명,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그 중에 1명 이상이어야 한다. 2. 대표자는 허가신청 이전 연도의 재산세 납부실적이 30만원 이상이거나, 6억원 이상의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자이어야 한다. 다만, 법인인 경우는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허가지역	1.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의 설치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 가능한 지역이어야 한다.
	시설기준	1.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이입·충전장소는 그 외면(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이입·충전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충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시설로서 사업소 안에 설치되는 것은 제외한다)까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제1호가목1)에서 정한 기준의 2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사업소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12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하며, 당해 도로는 사업소 진·출입에 사용되어야 한다.

사업의 종류	허 가 기 준	
액 화 석 유 가스 판매 사업, 액 화 석 유 가 스 충전사 업자의 영 업소	자격기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표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6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 중 1명,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그 중에 1명 이상이어야 한다. 2. 대표자는 허가신청 이전 연도의 재산세 납부실적이 20만원 이상이거나, 5억원 이상의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자이어야 한다. 다만, 법인인 경우는 자본금이 2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허가지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액화석유가스의 판매시설 및 충전시설의 영업소의 설치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 가능한 지역이어야 한다.
	시설기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액화석유가스 판매시설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보관실 및 사무실은 동일부지 내에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주차장(용기운반자동차의 원활한 통행과 용기의 원활한 하역작업을 위하여 부지)은 용기보관실 출입문 전면에 확보하여야 한다. 용기보관실, 사무실 및 주차장의 면적은 각각 다음과 같이 확보하여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용기보관실 : 38㎡ 이상 2) 사무실 : 18㎡ 이상 3) 주차장 : 23㎡ 이상 (단, 벌크로리로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는 판매업소는 벌크로리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충분한 부지 및 주차장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용기보관실 : 38㎡ 이상 2) 사무실 : 18㎡ 이상 2. 사업소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6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하며, 당해 도로는 사업소 진·출입에 사용되어야 한다. 3. 용기보관실은 그 외면으로부터 사업소경계까지 1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군산시 고시 제2014 -137호

군산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

군산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하고 동 관련도서 사본을 군산시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군 산 시 장

2014년 12 월 19 일

1.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84	15	보조간선	215	나운동 중로 2-18	산북동 중로 2-58	일반 도로	월명 공원	군산고94 (2009.11)	
변경	중로	2	84	15	보조간선	496	나운동 중로 2-18	산북동 중로 2-58	일반 도로	월명 공원	군산고94 (2009.11)	가각부, 연장착오 정정
기정	소로	2	190	8	국지도로	664	나운동 871-6 대1-5	나운동 865 중2-18	일반 도로		전북고392 (‘80.12.4)	
변경	소로	2	190	8	국지도로	664	나운동 871-6 대1-5	나운동 865 중2-18	일반 도로		전북고392 (‘80.12.4)	가각부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도서 : 실음생략. 끝.

고 시 문

군산시 고시 제 2014 - 139호

군산시 은파관광지 조성계획을 관광진흥법 제54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변경 결정하였기에 같은법 제5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변경사항을 고시하며, 관계도서는 군산시청 관광진흥과(454-3342)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4년 12월 일

군 산 시 장

1. 관광지명 : 은파관광지
2. 위 치 : 군산시 나운동, 지곡동, 미룡동, 옥구읍 일원
3. 지정면적 : 1,756,443m²(변경없음)
4. 시 행 자 : 군산시장
5. 사업기간 : (기정) 1985년~2014년, (변경) 1985년~2016년
6. 은파관광지 조성계획 세부시설 결정 총괄 조서 : 별첨(변경없음)
7. 은파관광지 조성계획 세부시설 결정 조서 : 별첨(변경없음)
8. 도로결정(변경) 조서 : 실음생략(열람장소 : 관광진흥과)
9. 편입토지 조서 : 실음생략(열람장소 : 관광진흥과)

은파관광지 조성계획(변경) 승인내용

1. 관광지명 : 은파관광지
2. 위 치 : 군산시 나운동, 지곡동, 미룡동, 옥구읍 일원
3. 면 적 : 1,756,443m²(변경없음)
4. 사업기간 : (기정) 1985년 ~ 2014년, (변경) 1985년 ~ 2016년
5. 사업시행자 : 군산시장
6. 관광지 조성계획변경(사유) 목적
 - 관광지 조성공사의 단계별 추진에 따라 잔여사업 시행을 위한 사업기간 연장
7. 관계법령 : 관광진흥법 제54조 제1항에 의거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은파관광지 조성계획(변경) 조서

1. 관광지명 : 은파관광지
2. 위 치 : 군산시 나운동, 지곡동, 미룡동, 옥구읍 일원
3. 면 적 : 1,756,443m²(변경없음)
4. 사업기간 : (기정) 1985년 ~ 2014년, (변경) 1985년 ~ 2016년
5. 사업시행자 : 군산시장
6. 토지이용계획결정 총괄조서

시설지구 구 분	면 적(m ²)			구성비 (%)	시 설 명
	기 정	변 경	증·감		
계	1,756,443	1,756,443	0	100	
공공편익	180,484	180,484	0	10.28	관리사무소, 화장실, 주차장, 오수펌프장, 도로, 양수장, 쓰레기 소각장
숙 박	61,933	61,933	0	3.53	호텔
상 가	43,957	43,957	0	2.50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운동오락	40,504	40,504	0	2.30	운동시설, 다목적운동장, 계류장, 야외수영장, 체력 단련장, 무도장, 보트클럽 하우스
휴양문화	197,576	197,576	0	11.25	광장, 야외공연장, 수변무대, 잔디광장, 피크닉장, 산림욕장, 전망대, 생태습지, 조경휴 게소, 자연학습장, 상징탑
기타시설	1,231,989	1,231,989	0	70.14	녹지, 유지

군산시 고시 제 2014 - 140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주택법」 제16조 5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제16조 제8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 12. 18.

군 산 시 장

1. 사업명 : 미장지구 A-2블럭 공동주택
2. 사업주체(변경)
 - 1) 명 칭 : (주)하나자산신탁
 - 2) 대표자 : 이창희
 - 3)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2, 신안빌딩 12층
3. 사업내용
 - 가. 사업위치 : 전라북도 군산시 미장동 미장지구 A-2블럭
 - 나. 주택구분 : 민영주택
 - 나. 대지면적 : 47,309.0000m²
 - 다. 건축면적 : 9,510.1229m²
 - 라. 연 면 적 : 153,067.2333m²
 - 마. 건축규모 : 아파트 13동 12~25층, 1,078세대
 - 전용 59.9994m² 141세대
 - 전용 84.9965m² 435세대
 - 전용 84.9811m² 200세대
 - 전용 84.9810m² 134세대

- 전용 84.9785m² 54세대
- 전용 84.9917m² 40세대
- 전용 100.4358m² 74세대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

사. 사 업 비 : 265,626,271천원

아. 사업기간 : 2012. 11. ~ 2015. 02.

4. 설계도서 : 승인설계도서와 같음

5.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주요 내용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건축면적	9,496.7266m ²	9,510.1229m ²	증13.3963m ²
연 면 적	152,984.7886m ²	153,067.2333m ²	증82.4467m ²
건 폐 율	20.07%	20.10%	
용 적 율	249.79%	249.93%	
주요변경사항	주택공급면적 변경		

6.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일 : 2014년 12월 17일

7. 기타 자세한 사항의 관계도면 및 서류는 군산시청(건축과 ☎063-454-3712)에 비치되어 있으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고시 제2014-141호

군산 페이퍼코리아 공장부지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군산 페이퍼코리아 공장이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하고 결정도서 사본을 군산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보입니다.

군 산 시 장

2014년 12 월 일

I. 군산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①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도 면 표 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경	변경후		
신설	48	페이퍼코리아 공장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군산시 조촌동 2번지 일대	-	증)596,163	596,163	금회	

②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부분

1)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구 분		면 적(m ²)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596,163	-	596,163	100.0	-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621	증) 3,314	3,935	0.7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증) 348,423	348,423	58.5	-
	준주거지역	-	증) 84,810	84,810	14.2	-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	증) 105,721	105,721	17.7	-
공업지역	준공업지역	595,542	감) 595,542	-	-	-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	증) 53,274	53,274	8.9	-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도로총괄표

유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26	22,296 (7,059)	634,584 (127,859)	3	6,982 (832)	237,453 (19,362)	9	9,855 (2,789)	268,705 (42,502)	14	5,459 (3,438)	128,426 (65,995)
대로	5	18,484 (3,247)	572,378 (69,139)	1	6,314 (164)	221,416 (3,325)	1	7,790 (724)	234,417 (11,700)	3	4,380 (2,359)	116,545 (54,114)
중로	13	3,610 (3,610)	60,955 (57,469)	2	668 (668)	16,037 (16,037)	8	2,065 (2,065)	34,288 (30,802)	3	877 (877)	10,630 (10,630)
소로	8	202 (202)	1,251 (1,251)	-	-	-	-	-	-	8	202 (202)	1,251 (1,251)

※ ()안의 면적은 대상지내 연장 및 면적임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정	대로	1	4	35	주간선 도로	6,314 (164)	조촌동 대1-1	광2-2 유원지구역계	일반 도로	-	건고228 ('86.5.23)	-
변경	대로	1	4	35~38	주간선 도로	6,314 (164)	조촌동 대1-1	광2-2 유원지구역계	일반 도로	-	-	-
기정	대로	2	4	30	보조간선 도로	7,790 (724)	경암동 3호광장	여방리 10호광장	일반 도로	6호 광장	건고228 ('86.5.23)	-
변경	대로	2	4	30~33	보조간선 도로	7,790 (724)	경암동 3호광장	여방리 10호광장	일반 도로	6광장	-	-
기정	대로	3	6	25	보조간선 도로	2,915 (894)	경장동 대1-3	구암동 대2-4	일반 도로	6토지구획	건고525 ('67.7.25)	-
변경	대로	3	6	25~28	보조간선 도로	2,915 (894)	경장동 대1-3	구암동 대2-4	일반 도로	6토지구획	-	-
기정	중로	2	65	15	집산 도로	580 (580)	구암동 대2-4	조촌동 대3-6	일반 도로	-	군산고242 (2003.4)	-
변경	중로	2	65	17~20	집산 도로	580 (580)	구암동 대2-4	조촌동 대3-6	일반 도로	-	-	-

(계 속)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 별	번호	폭원								
신설	대로	3	47	25~ 31	보조 간선 도로	715 (715)	대로3-6	대로2-4	일반 도로	-	-	-
신설	대로	3	48	25~ 31	보조 간선 도로	750 (750)	중로2-65	소촌동 664번지	일반 도로	-	-	-
신설	중로	1	119	23	집산 도로	142 (142)	대로3-6	중로2-143	일반 도로	-	-	-
신설	중로	1	120	21~ 27	집산 도로	526 (526)	중로2-143	대로2-4	일반 도로	-	-	-
신설	중로	2	142	15	집산 도로	290 (290)	중로1-120	대로3-47	일반 도로	-	-	-
신설	중로	2	143	15	집산 도로	848 (848)	중로2-65	대로1-4	일반 도로	-	-	-
신설	중로	2	144	15	집산 도로	22 (22)	중로3-76	중로2-143	일반 도로	-	-	-
신설	중로	2	145	15	집산 도로	79 (79)	중로1-119	중로3-76	일반 도로	-	-	-
신설	중로	2	146	15	집산 도로	25 (25)	중로3-76	대로3-47	일반 도로	-	-	-
신설	중로	2	147	15	집산 도로	92 (92)	대로3-47	중로2-148	일반 도로	-	-	-
신설	중로	2	148	15	집산 도로	129 (129)	대로3-6	중로2-143	일반 도로	-	-	-
신설	중로	3	74	12	국지 도로	49 (49)	중로2-142	문화시설 용지	일반 도로	-	-	-
신설	중로	3	75	12	국지 도로	231 (231)	중로2-142	중로2-142	일반 도로	-	-	-
신설	중로	3	76	12	국지 도로	597 (597)	중로2-145	중로2-145	일반 도로	-	-	-
신설	소로	3	773	7	국지 도로	40 (40)	주차장90	중로2-147	일반 도로	-	-	-
신설	소로	3	774	6	특수 도로	22 (22)	중로3-76	중로2-143	보행자 전용도로	-	-	-
신설	소로	3	775	6	특수 도로	22 (22)	중로3-76	중로2-143	보행자 전용도로	-	-	-
신설	소로	3	776	6	특수 도로	29 (29)	공공공지33	중로3-76	보행자 전용도로	-	-	-
신설	소로	3	777	6	특수 도로	29 (29)	중로3-76	공공공지33	보행자 전용도로	-	-	-
신설	소로	3	778	6	특수 도로	20 (20)	대로3-6	중로3-76	보행자 전용도로	-	-	-
신설	소로	3	779	6	특수 도로	20 (20)	대로3-6	중로3-76	보행자 전용도로	-	-	-
신설	소로	3	780	6	특수 도로	20 (20)	대로3-6	중로3-76	보행자 전용도로	-	-	-

※ ()안의 면적은 대상지내 연장임

(2) 주차장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87	주차장	조촌동 2	-	증) 701	701	-	-
신설	88	주차장	조촌동 2	-	증) 2,174	2,174	-	-
신설	89	주차장	조촌동 2	-	증) 2,043	2,043	-	-
신설	90	주차장	조촌동 2	-	증) 1,849	1,849	-	-

나. 공간시설

(1) 광장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32	광장	근린광장	조 촌 동 474-3	-	증) 3,042	3,042	-	-

(2) 공공공지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33	공공공지	-	조촌동 2	-	증) 3,034	3,034	-	-

(3) 녹지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13	공업지역변	완충녹지	세 풍 제 지 남 측 (대 3-6 변)	27,900	감) 27,900	-	건고228 ('86.5.23)	-
신설	108	녹지	완충녹지	조촌동(대2-4변)	-	증) 3,857	3,857	-	-
신설	109	녹지	완충녹지	조촌동(대2-4변)	-	증) 2,549	2,549	-	-
신설	110	녹지	완충녹지	조촌동(중2-65변)	-	증) 3,955	3,955	-	-
신설	111	녹지	완충녹지	조촌동(중2-65변)	-	증) 1,863	1,863	-	-
신설	112	녹지	완충녹지	조촌동(대3-6변)	-	증) 4,041	4,041	-	-
신설	113	녹지	완충녹지	조촌동(대1-4변)	-	증) 1,865	1,865	-	-
신설	114	녹지	완충녹지	구암천변	-	증) 3,220	3,220	-	-
신설	115	녹지	완충녹지	조촌동 450-15대	-	증) 2,390	2,390	-	-
신설	116	녹지	완충녹지	조촌동(중2-143변)	-	증) 766	766	-	-
신설	117	녹지	연결녹지	조촌동(대3-47변)	-	증) 4,589	4,589	-	-

(4) 공원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34	공원	근린공원	조촌동 2	-	증) 27,530	27,530	-	-
신설	91	공원	어린이공원	조촌동 2	-	증) 3,264	3,264	-	-
신설	92	공원	어린이공원	조촌동 2	-	증) 2,411	2,411	-	-

다. 유통 및 공급시설

(1) 전기공급설비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11	발전시설	조촌동 41번지외 1필 지	3,890	감) 3,890	-	전북고107 (*08.05.16)	-

라. 공공·문화체육시설

(1) 학교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76	학교	초등학교	조촌동 2	-	증) 12,500	12,500	-	-
신설	77	학교	초등학교	조촌동 2	-	증) 13,586	13,586	-	-
신설	42	학교	중학교	조촌동 2	-	증) 12,000	12,000	-	-
신설	7	학교	유치원	조촌동 2	-	증) 3,523	3,523	-	-
신설	8	학교	유치원	조촌동 2	-	증) 3,533	3,533	-	-

(2) 공공청사

구분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9	공공청사1	공공청사	조촌동 2	-	증) 752	752	-	-
신설	20	공공청사2	공공청사	조촌동 2	-	증) 744	744	-	-

②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부분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공동주택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가구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A1	-	36,974	조촌동 2번지 일원	36,974	공동주택
A2	-	60,793	조촌동 2번지 일원	60,793	공동주택
A3	-	21,053	조촌동 2번지 일원	21,053	공동주택
A4	-	43,775	조촌동 41-16번지 일원	43,775	공동주택
A5	-	36,977	조촌동 2번지 일원	36,977	공동주택
A6	-	56,506	조촌동 2번지 일원	56,506	공동주택

나. 상업용지

- 획지간 합병은 인접 획지간 남북 또는 동서측으로 1회에 한하여 합병가능
- 획지분할은 획지분할가능선으로 지정된 대지에 한하여 획지분할이 가능하며, 획지분할가능선을 다르게 분할하고자 할 경우 획지분할가능선에 의한 획지면적의 30%범위 이내에서 변경이 가능함
- 획지분할가능선이 지정된 획지는 획지분할가능선간 합병은 가능함

도면번호	가구번호	가구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B1	-	20,583	조촌동 450-13번지 일원	20,583	2개획지 분할 가능
B2	-	2,513	조촌동 2번지	2,513	4개획지 분할 가능
B3	-	2,693	조촌동 2번지	2,693	4개획지 분할 가능
B4	-	1,694	조촌동 2번지	1,694	4개획지 분할 가능
B5	-	1,694	조촌동 2번지	1,694	4개획지 분할 가능
B6	-	756	조촌동 2번지	756	-
B7	-	765	조촌동 2번지	765	-
B8	-	548	조촌동 2번지	548	-
B9	-	548	조촌동 2번지	548	-
B10	-	548	조촌동 2번지	548	-
B11	-	530	조촌동 2번지	530	-
B12	-	690	조촌동 2번지	690	-
B13	-	699	조촌동 2번지	699	-
B14	-	699	조촌동 2번지	699	-
B15	-	699	조촌동 2번지	699	-
B16	-	699	조촌동 2번지	699	-
B17	-	699	조촌동 2번지	699	-
B18	-	699	조촌동 2번지	699	-
B19	-	690	조촌동 2번지	690	-
B20	-	690	조촌동 2번지	690	-
B21	-	699	조촌동 2번지	699	-
B22	-	699	조촌동 2번지	699	-

(계 속)

도면번호	가구번호	가구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B23	-	699	조촌동 2번지	699	-
B24	-	699	조촌동 2번지	699	-
B25	-	699	조촌동 2번지	699	-
B26	-	699	조촌동 2번지	699	-
B27	-	690	조촌동 2번지	690	-
B28	-	708	조촌동 2번지	708	-
B29	-	743	조촌동 2번지 일원	743	-
B30	-	509	조촌동 2번지 일원	509	-
B31	-	510	조촌동 2번지 일원	510	-
B32	-	509	조촌동 2번지 일원	509	-
B33	-	509	조촌동 2번지 일원	509	-
B34	-	5,314	조촌동 41번지 일원	5,314	2개획지 분할 가능
B35	-	3,369	조촌동 41번지 일원	3,369	-

다. 근린생활시설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가구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C1	-	4,573	1	조촌동 2	701	-
			2	조촌동 2	617	
			3	조촌동 2	664	
			4	조촌동 2	655	
			5	조촌동 2	617	
			6	조촌동 2	664	
			7	조촌동 2	655	
C2	-	2,368	1	조촌동 2	469	-
			2	조촌동 2	479	
			3	조촌동 2	479	
			4	조촌동 2	479	
			5	조촌동 2	462	

라. 기타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가구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D	-	8,265	조촌동 450-15번지 일원	8,265	-

마. 학교

도면번호	가구번호	가구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E1	-	12,500	조촌동 2번지	12,500	-
E2	-	12,000	조촌동 2번지	12,000	-
E3	-	13,586	조촌동 2번지	13,586	-

바. 유치원

도면번호	가구번호	가구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F1	-	3,523	조촌동 2번지	3,523	
F2	-	3,533	조촌동 2번지	3,533	

사. 문화시설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가구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G	-	2,176	조촌동 2번지	2,176	-

아. 공공청사

도면번호	가구번호	가구면적(㎡)	획지			비고
			번호	위치	면적(㎡)	
H	-	752	1	조촌동 2번지	752	-
	-	744	2	조촌동 2번지	744	-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높아배치 등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

(1) 공동주택용지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A1,A2, A3,A4, A5	-	용도	허용용도 (가)	•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불허용도 (1)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4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높이	• 30층 이하	
		배치	• 일조 및 조망권 확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남동 및 남서향 위주의 배치유도 • 개방감, 단지내 경관증진을 위해 다양한 층수의 주동배치로 단지내 변화 및 리듬감 유도	
		형태	• 공동주택의 지붕은 평지붕, 경사지붕 등을 권장하며 과도한 옥탑 건축물은 지양 • 공동주택의 외관 및 입면은 계획구역의 입지를 고려한 차별화된 외관디자인과 저층부·중층부·고층부로 구분하여 마감재 및 입면디자인의 변화 유도	
		색채	• 군산시 도시경관기본계획의 색채기준을 준용하여 적용 • 기초색을 white 중심의 무채색계열과 B, PB, YR, YG 계열 중심으로 사용 • 보조색은 기초색과 동색계열 중 2-3차 혼합색으로 하여 안정되고 고상한 색감 연출 • 초점경관으로서 인지성이나 시각적 충격을 연출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보조색이나 강조색을 활용한 다색대비나 색상대비를 통하여 다양성을 연출	
		건축선	• 건축한계선 - 도로 경계부 : 6m이격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A6	-	용도	허용용도 (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불허용도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40% 이하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350% 이하 	
		높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40층 이하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조 및 조망권 확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남동 및 남서향 위주의 배치유도 개방강, 단지내 경관증진을 위해 다양한 층수의 주동배치로 단지내 변화 및 리듬감 유도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주택의 지붕은 평지붕, 경사지붕 등을 권장하며 과도한 옥탑 건축물은 지양 공동주택의 외관 및 입면은 계획구역의 입지를 고려한 차별화된 외관디자인과 저층부·중층부·고층부로 구분하여 마감재 및 입면디자인의 변화 유도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군산시 도시경관기본계획의 색채기준을 준용하여 적용 기조색을 white 중심의 무채색계열과 B, PB, YR, YG 계열 중심으로 사용 보조색은 기조색과 동색계열 중 2-3차 혼합색으로 하여 안정되고 고상한 색감 연출 초점경관으로서 인지성이나 시각적 충격을 연출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보조색이나 강조색을 활용한 다색대비나 색상대비를 통하여 다양성을 연출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한계선 - 도로 경계부 : 6m이격 			

(2) 상업용지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B12~B27		용도	허용용도 (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용도 중 다음의 용도 -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의사, 총포판매점 제외) -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 전시장 - 제7호의 판매시설 - 제9호의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제외) - 제10호의 교육시설 중 학원 - 제13호의 운동시설 - 제14호의 업무시설 -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불허용도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80% 이하	
		용적률	• 400% 이하	
		높이	• 10층 이하	
		배치	• 건물 전면이 도로를 향하도록 건축배치 유도	
		형태	• 개별건축계획 수용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군산시 도시경관기본계획의 색채기준을 준용하여 적용 용도특성상 기초색과 보조색의 색상범위를 넓게 허용 기초색의 색조를 제한하여 전체적으로 통일된 색채 이미지연출 : 기초색 채도를 7 이하로 제한 강조색은 2개 이하로 제한하고 상가 출입구나 건축물 모서리를 중심으로 사용하도록 권장 초점경관은 보조색이나 강조색을 활용한 다색대비나 색상대비를 통하여 다양성을 연출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한계선 - 도로 경계부 : 3m이격 			
B6~B11, B28~B33		용도	허용용도 (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용도 중 다음의 용도 -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의사, 총포판매점 제외) -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 전시장 - 제7호의 판매시설 - 제9호의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제외) - 제10호의 교육시설 중 학원 - 제13호의 운동시설 - 제14호의 업무시설 -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불허용도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80% 이하	
		용적률	• 600% 이하	
		높이	• 20층 이하	
		배치	• 건물 전면이 도로를 향하도록 건축배치 유도	
		형태	• 개별건축계획 수용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군산시 도시경관기본계획의 색채기준을 준용하여 적용 용도특성상 기초색과 보조색의 색상범위를 넓게 허용 기초색의 색조를 제한하여 전체적으로 통일된 색채 이미지연출 : 기초색 채도를 7 이하로 제한 강조색은 2개 이하로 제한하고 상가 출입구나 건축물 모서리를 중심으로 사용하도록 권장 초점경관은 보조색이나 강조색을 활용한 다색대비나 색상대비를 통하여 다양성을 연출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한계선 - 도로 경계부 : 3m이격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B1~B5, B34, B35	-	용도	허용용도 (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용도 중 다음의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의사, 총포판매점 제외) -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 전시장 - 제7호의 판매시설 - 제9호의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제외) - 제10호의 교육시설 중 학원 - 제13호의 운동시설 - 제14호의 업무시설 -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불허용도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80% 이하	
		용적률	• 800% 이하	
		높이	• 20층 이하	
		배치	• 건물 전면이 도로를 향하도록 건축배치 유도	
		형태	• 개별건축계획 수용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군산시 도시경관기본계획의 색채기준을 준용하여 적용 용도특성상 기초색과 보조색의 색상범위를 넓게 허용 기초색의 색조를 제한하여 전체적으로 통일된 색채 이미지연출 : 기초색 채도를 7 이하로 제한 강조색은 2개 이하로 제한하고 상가 출입구나 건축물 모서리를 중심으로 사용하도록 권장 초점경관은 보조색이나 강조색을 활용한 다색대비나 색상대비를 통하여 다양성을 연출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한계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 경계부 : 3m이격 	

(3) 근린생활시설용지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C1, C2	-	용도	허용용도 (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용도 중 다음의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총포판매점, 장의사, 게임 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당구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제외) -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직업훈련소 - 제14호의 업무시설
			불허용도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400% 이하	
		높이	• 10층 이하	
		배치	• 건물 전면이 도로를 향하도록 건축배치 유도	
		형태	• 개별건축계획 수용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군산시 도시경관기본계획의 색채기준을 준용하여 적용 용도특성상 기초색과 보조색의 색상범위를 넓게 허용 기초색의 색상 : YR, Y 계열 중심으로 사용 기초색의 색조를 제한하여 전체적으로 통일된 색채 이미지연출 : 기초색 채도를 7 이하로 제한 강조색은 2개 이하로 제한하고 상가 출입구나 건축물 모서리를 중심으로 사용하도록 권장 초점경관은 보조색이나 강조색을 활용한 다색대비나 색상대비를 통하여 다양성을 연출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한계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 경계부 : 3m이격 	

(4) 기타용지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D	-	용도	허용용도 (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용도 중 다음의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호, 제2호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의사, 총포판매점 제외) -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 전시장 -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제외) -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불허용도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4호의 업무시설(바닥면적 합계 3천 미만)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300% 이하
		높이	• 30층 이하
		배치	• 개별건축계획 수용
		형태	• 개별건축계획 수용
		색채	• 개별건축계획 수용
		건축선	• 건축한계선 - 도로 경계부 : 3m이격

(5) 학교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E1, E2, E3	-	용도	허용용도 (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용도 중 다음의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초등학교, 중학교)
			불허용도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높이	• 5층 이하
		배치	• 개별건축계획 수용
		형태	• 개별건축계획 수용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산시 도시경관기본계획의 색채기준을 준용하여 적용 • 지구 특성을 반영한 색상을 기초색으로 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채색과 YR 계열의 색채를 사용 - YR, GY, G, PB 계열의 색상을 여건에 따라 사용하여 네치럴한 이미지를 강화 • 건축물 용도를 고려한 색상 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시설은 세대특성을 고려하여 강조색을 활용, 색상대비를 통하여 경쾌한 색상 이미지 강화 • 저채도, 고명도의 색상을 사용하여 공공건축물에서 풍겨나오는 위압감과 답답함을 해소
건축선	• 건축한계선 - 도로 경계부 : 3m이격		

(6) 유치원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F1, F2	-	용도	허용용도 (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용도 중 다음의 용도 -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유치원)
			불허용도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50% 이하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 이하 	
		높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5층 이하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별건축계획 수용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별건축계획 수용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군산시 도시경관기본계획의 색채기준을 준용하여 적용 지구 특성을 반영한 색상을 기초색으로 채용 - 무채색과 YR 계열의 색채를 사용 - YR, GY, G, PB 계열의 색상을 여건에 따라 사용하여 네쳐럴한 이미지를 강화 건축물 용도를 고려한 색상 채용 - 학교시설은 세대특성을 고려하여 강조색을 활용, 색상대비를 통하여 경쾌한 색상 이미지 강화 저채도, 고명도의 색상을 사용하여 공공건축물에서 풍겨나오는 위압감과 답답함을 해소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한계선 - 도로 경계부 : 3m이격 			

(7) 문화시설용지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G	-	용도	허용용도 (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용도 중 다음의 용도 -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회의장, 전시장 -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도서관 -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용도 중 다음의 용도를 지상부 연면적의 40%미만에 한하여 허용 -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의사, 총포판매점 제외) - 제13호의 운동시설
			불허용도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50% 이하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 이하 	
		높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5층 이하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별건축계획 수용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군산시 도시경관기본계획의 색채기준을 준용하여 적용 지구 특성을 반영한 색상을 기초색으로 채용 - 무채색과 YR 계열의 색채를 사용 - YR, GY, G, PB 계열의 색상을 여건에 따라 사용하여 네쳐럴한 이미지를 강화 건축물 용도를 고려한 색상 채용 - 대민업무가 많은 공공시설은 입면재료와 연계하여 개방감과 투명성 강화 저채도, 고명도의 색상을 사용하여 공공건축물에서 풍겨나오는 위압감과 답답함을 해소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한계선 - 도로 경계부 : 3m이격 	

(8) 공공청사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H	-	용도	허용용도 (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용도 중 다음의 용도 -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바목(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등) -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불허용도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높이	• 5층 이하
		배치	• 개별건축계획 수용
		형태	• 개별건축계획 수용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산시 도시경관기본계획의 색채기준을 준용하여 적용 • 지구 특성을 반영한 색상을 기초색으로 채용 - 무채색과 YR 계열의 색채를 사용 - YR, GY, G, PB 계열의 색상을 여건에 따라 사용하여 네쳐럴한 이미지를 강화 • 건축물 용도를 고려한 색상 채용 - 대민업무가 많은 공공시설은 입면재료와 연계하여 개방감과 투명성 강화 • 저채도, 고명도의 색상을 사용하여 공공건축물에서 풍겨나오는 위압감과 답답함을 해소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한계선 - 도로 경계부 : 3m이격

3.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차량 진출입에 관한 사항

도면번호	위치	계획내용	비고
A1~A6, B3, B5~B11 B28~B35, C2, E1~E3, F1, G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진출입구불허구간 계획 - 간선가로 및 교차로 일정구간 이내를 차량출입 불허구간으로 설정하여 원활한 교통흐름 도모 	-

나.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

(1) 차폐조경

도면번호	위치	계획내용	비고
①	A1	• 대지경계선과 건축한계선 사이의 공간을 소음 등의 환경악영향 저감을 위해 차폐조경으로 조성(단, 차량·보행출입구가 설치되는 구간은 제외)	폭 6m
②	A2	• 대지경계선과 건축한계선 사이의 공간을 소음 등의 환경악영향 저감을 위해 차폐조경으로 조성(단, 차량·보행출입구가 설치되는 구간은 제외)	폭 6m
③	A3	• 대지경계선과 건축한계선 사이의 공간을 소음 등의 환경악영향 저감을 위해 차폐조경으로 조성(단, 차량·보행출입구가 설치되는 구간은 제외)	폭 6m
④	A4	• 대지경계선과 건축한계선 사이의 공간을 소음 등의 환경악영향 저감을 위해 차폐조경으로 조성(단, 차량·보행출입구가 설치되는 구간은 제외)	폭 6m
⑤	A5	• 대지경계선과 건축한계선 사이의 공간을 소음 등의 환경악영향 저감을 위해 차폐조경으로 조성(단, 차량·보행출입구가 설치되는 구간은 제외)	폭 6m
⑥	A6	• 대지경계선과 건축한계선 사이의 공간을 소음 등의 환경악영향 저감을 위해 차폐조경으로 조성(단, 차량·보행출입구가 설치되는 구간은 제외)	폭 6m

(2) 공개공지

도면번호	위치	계획내용	비고
⑦	B1	• 폭은 5m 이상으로 설치하며 규모는 군산시 건축조례 제34조에 서 규정하고 있는 규모이상으로 조성하여 보행공간 확보 및 휴식 공간을 제공	위치지정
⑧	B34	• 폭은 5m 이상으로 설치하며 규모는 군산시 건축조례 제34조에 서 규정하고 있는 규모이상으로 조성하여 보행공간 확보 및 휴식 공간을 제공	위치지정

(3) 전면공지

도면번호	위치	계획내용	비고
⑨	E1, E2, G, H	• 보행활동에 지장을 주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며 상시 공공에게 개방된 구조로 조성하여야 하며, 보도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전면공지의 조성방법에 따라야 함.(단, 차량출입구가 설치되는 구간은 제외)	폭 3m
⑩	F1	• 보행활동에 지장을 주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며 상시 공공에게 개방된 구조로 조성하여야 하며, 보도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전면공지의 조성방법에 따라야 함.(단, 차량출입구가 설치되는 구간은 제외)	폭 3m
⑪, ⑫	C1, C2, E3, F2	• 보행활동에 지장을 주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며 상시 공공에게 개방된 구조로 조성하여야 하며, 보도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전면공지의 조성방법에 따라야 함.(단, 차량출입구가 설치되는 구간은 제외)	폭 3m
⑬	D	• 보행활동에 지장을 주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며 상시 공공에게 개방된 구조로 조성하여야 하며, 보도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전면공지의 조성방법에 따라야 함.(단, 차량출입구가 설치되는 구간은 제외)	폭 3m
⑭~⑳	B1~B35	• 보행활동에 지장을 주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며 상시 공공에게 개방된 구조로 조성하여야 하며, 보도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전면공지의 조성방법에 따라야 함.(단, 차량출입구가 설치되는 구간은 제외)	폭 3m

(4) 담장 및 방음벽

위치	계획내용	비고
A1~A6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담장은 개방성 확보 및 폐쇄감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부득이한 경우 높이 1.5m 이하의 투시형담장 또는 생울타리 등으로 조성 도로변에 방음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음저감 및 주변환경과의 조화를 위하여 목재방음벽, 투명방음벽, 식생형 방음벽 등으로 설치 	-
B1~B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담장은 개방성 확보 및 폐쇄감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칙적 불허 	-
C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담장은 개방성 확보 및 폐쇄감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칙적 불허 	-
D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담장은 개방성 확보 및 폐쇄감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부득이한 경우 높이 1.0m 이하의 투시형담장 또는 생울타리 등으로 조성 	-
G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담장은 개방성 확보 및 폐쇄감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부득이한 경우 높이 1.0m 이하의 투시형담장 또는 생울타리 등으로 조성 	-
H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담장은 개방성 확보 및 폐쇄감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부득이한 경우 높이 1.0m 이하의 투시형담장 또는 생울타리 등으로 조성 	-

(5) 옥외광고물계획

위치	계획내용	비고
지구단위 계획구역 전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판 총수는 업소당 2개소 이하로 제한 간판 크기는 가로 120cm, 세로 200cm 이하로 제한 (단, 학교, 유치원, 공공청사, 문화시설용지 제외) ※ 간판의 색채, 위치, 글씨채 등은 시행지침 참조 	-

(6) 지구단위계획 경미한 변경사항

위치	계획내용	비고
지구단위 계획구역 전체	<p>○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 허가권자가 지구단위계획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의 기본 취지 및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절차는 이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결정으로 단위 도시계획시설부지 면적의 5%미만인 시설부지의 변경인 경우(도로의 경우에는 시점 및 종점이 변경되지 아니하고 중심선이 종전에 결정된 도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며, 공원 및 녹지의 경우에는 면적이 증가되는 경우에 한한다) 2.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세부시설의 결정 또는 변경인 경우 3.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10%이내의 변경 및 동 변경구역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는 5%) 4. 가구면적의 10% 이내의 변경인 경우 5. 획지면적의 30% 이내의 변경인 경우 6. 건축물높이의 20% 이내의 변경인 경우(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포함) 7. 다음의 1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지구단위계획에 2필지 이상의 토지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나. 지구단위계획에 합벽건축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다. 지구단위계획에 주차장·보행자통로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2필지 이상의 토지에 건축물을 동시에 건축할 필요가 있는 경우 8. 건축선의 1m 이내의 변경인 경우(획지계획의 변경에 따른 건축선의 이동은 건축선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본다) 9. 건축물의 배치·형태 또는 색채의 변경인 경우 10. 교통처리계획중 주차장 출입구·차량출입구·보행자출입구의 위치변경 및 보행자출입구의 추가설치 11.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으로서 대지내 전면공지, 공개공지 및 통경축의 신설, 폐지 및 위치변경, 다만 통경축은 중심선이 종전에 결정된 통경축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12. 지하 또는 공중공간에 설치할 시설물의 높이·깊이·배치 또는 규모 13. 대문·담 또는 울타리의 형태 또는 색채 14. 간판의 크기·형태·색채 또는 재질 15. 장애인·노약자 등을 위한 편의시설계획 16.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관한 계획 	-

II. 군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도면 : 게재 생략

※ 군산시 도시계획과(063-454-3503)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함

고 시 문

군산시 고시 제 2014 - 143호

은파유원지 조성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하였기에 이를 고시하며 관계도서는 군산시청 관광진흥과(454-3342) 및 도시계획과(454-3502)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제 목 : 은파 유원지 조성계획 결정(변경)

1. 고시년월일 : 2014년 12월 26일
2. 관광지위치 : 군산시 나운동, 지곡동, 미룡동, 옥구읍 일원
3. 관광지면적 : 2,595,238m²(변경없음)

구 분	위 치	면 적(m ²)		비 고
		기 정	변 경	
은파관광지	군산시 나운동, 지곡동, 미룡동, 옥구읍 일원	2,595,238	2,595,238	-

- 은파유원지 세부시설 총괄 조서 : “변경없음”
- 은파유원지 세부시설 결정 조서 : “변경없음”
- 도로 결정(변경) 조서 : “실음생략” (열람장소 : 관광진흥과)
- 편입토지조서 : “실음생략” (열람장소 : 관광진흥과)

2014. 12. 26.

군 산 시 장

은파 유원지 조성계획 결정(변경) 승인내용

1. 시설명 : 은파 유원지
2. 위치 : 군산시 나운동, 지곡동, 미룡동, 옥구읍 일원
3. 면적 : 2,595,238㎡(변경없음)
5.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6.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성계획(변경)수립
7. 사업시행자 : 군산시장
8. 사업기간
 - 당 초 : 1985년 ~ 2014년
 - 변경 : 1985년 ~ 2016년
9. 유원지 조성계획 결정(변경) 사유
 - 은파 유원지 조성공사 단계별 추진에 따른 잔여사업 시행을 위한 사업기간 연장 필요

은파유원지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시설명 : 은파 유원지
2. 위치 : 군산시 나운동, 지곡동, 미룡동, 옥구읍 일원
3. 면적 : 2,595,238㎡(변경없음)

구분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은파관광지	군산시 나운동, 지곡동, 미룡동, 옥구읍 일원	2,595,238	2,595,238	-

4. 은파유원지 세부시설 총괄 조서(변경없음)

시설지구 구분	면적(㎡)			구성비 (%)	시설명
	기정	변경	증감		
계	2,595,238	2,595,238	-	100.00	
편익 및 관리시설	231,041	231,041	-	8.90	도로, 주차장, 관망대, 종합매점, 일반음식점, 화장실, 오수펌프장, 양수장, 소각장, 야외공연장, 관리사무소
휴양시설	252,759	252,759	-	9.74	호텔, 광장, 수변무대, 잔디광장, 피크닉장, 삼림욕장, 생태습지, 조경휴게소, 자연학습장
운동시설	40,504	40,504	-	1.56	체육시설, 계류장, 야외수영장, 체력단련장, 무도장, 보트하우스
특수시설	150	150	-	0.01	상징탑
기타	2,070,784	2,070,784	-	79.79	녹지, 유지

군산시 고시 제2015 - 1호

금광지구 주거환경개선 정비사업 준공 고시

1. 군산시 금광지구 주거환경개선 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사 완료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군산시청(건축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공람합니다.

2015. 1. 2.

군 산 시 장

가.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① 군산시 금광지구 주거환경개선 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① 위치 : 군산시 금광동 156-1번지 일원
- ② 면적 : 79,374m²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① 성명 : 군산시장
- ② 주소 : 전북 군산시 시청로 17번 (조촌동 군산시청)

라. 사업기간 : 2011. 1 ~ 2014. 12

마. 정비기반시설

① 도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1	소로	2	31	8	집산 도로	605 (278)	송창동 14호광장	오룡동 대 3-2	일반 도로		건고 525 ('67.7.25)	
2	소로	2	36	8	국지 도로	526 (405)	명산동 18-1 중 1-3	오룡동 834-79	일반 도로		건고 525 ('67.7.25)	
3	소로	2	39	8	국지 도로	293 (95)	오룡동 823-1 중 2-3	오룡동 소 3-35	일반 도로		건고 525 ('67.7.25)	
4	소로	3	33	6	국지 도로	173 (173)	오룡동 938 소 2-31	금광동 159-44 소 2-36	일반 도로		건고 525 ('67.7.25)	
5	소로	3	34	6	국지 도로	92 (92)	금광동 157-53 소 2-36	오룡동 소 2-31	일반 도로		군산고 210 ('96.6.1)	
6	소로	3	35	6	국지 도로	148 (108)	신평동 998-9 대 3-2	오룡동 834-79 소 2-36	일반 도로		건고 525 ('67.7.25)	
7	소로	3	474	6	국지 도로	38 (38)	금광동 170-10 대 3-2	금광동 157-26 소 2-36	일반 도로		군산고 607 (99.12)	
8	소로	3	475	6	국지 도로	32 (32)	금광동 170-36 대 3-2	금광동 170-66 소 2-36	일반 도로		군산고 607 (99.12)	
9	소로	3	476	6	국지 도로	60 (60)	명산동 21-11 중 3-4	금광동 156-6 소 3-33	일반 도로		군산고 607 (99.12)	

② 주차장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1	67	주차장	오룡동 931-5번지 일원	-	1,972	1,972	전라북도 고시 제2012-29호 ('12.2.17)	-
2	86	주차장	명산동 20-8번지 일원	-	505	505	전라북도 고시 제2013-229호 ('13.10.4)	

③ 공공공지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1	11	공공공지	금광동 157-63번지 일원	-	7,333	7,333	전라북도 고시 제2012-29호 ('12.2.17)	

④ 소공원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기 정	변 경	변경후		
1	9	소공원	명산동 20-8번지 일원	금광동 156-57번지 일원	-	765	765	전라북도 고시 제2012-29호 ('12.2.17)	

바. 공동이용시설

① 경 로 당

구분	시설명	위 치	면 적(m ²)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1	경로당	군산시 오룡동 834-73번지 일원	-	255	25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목적 공동이용시설 설치공간 · 공동체 활동증진 또는 지속적인 사회경제적 정비를 위한 물리적 지원시설

사. 관계도서 열람 : 군산시청 건축과 비치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건축과(☎ 454-33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고시 제2015 - 2호

미원지구 주거환경개선 정비사업 준공 고시

1. 군산시 미원지구 주거환경개선 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사 완료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군산시청(건축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공람합니다.

2015. 1. 2.

군 산 시 장

가.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① 군산시 미원지구 주거환경개선 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① 위치 : 군산시 미원동 311번지 일원
- ② 면적 : 46,077.4m²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① 성명 : 군산시장
- ② 주소 : 전북 군산시 시청로 17번 (조촌동 군산시청)

라. 사업기간 : 2011. 1 ~ 2014. 12

마. 정비기반시설

① 도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1	소로	1	424	10	국지 도로	158 (158)	미원동 337-3 중로1-3	미원동 278-3 소로3-51	일반 도로		전북고2012-56 ('12.3.23)	
2	소로	2	48	8	국지 도로	170 (170)	미원동 302 소로3-737	미원동 381 소로1-46	일반 도로		건고91 ('68.7.22)	
3	소로	2	49	8	국지 도로	87 (87)	미원동 272 소로3-51	장재동 159-2 소로3-52	일반 도로		건고91 ('68.7.22)	
4	소로	2	52	8	국지 도로	414 (116)	미원동 32 중로1-3	장재동 212-4 소로1-48	일반 도로		건고525 ('67.7.25)	
5	소로	2	975	8	국지 도로	30 (30)	미원동 221 대로3-4	미원동 239-5 소로3-736	일반 도로		전북고2012-56 ('12.3.23)	
6	소로	3	51	6	국지 도로	345 (155)	미원동 206 대로3-4	장재동 소로1-46	일반 도로		건고525 ('67.7.25)	
7	소로	3	736	6	국지 도로	295 (295)	미원동 306-6 소로2-52	미원동 290-3 소로2-52	일반 도로		전북고2012-56 ('12.3.23)	
8	소로	3	738	6	국지 도로	41 (41)	미원동 290 소로3-736	미원동 244-4 소로3-51	일반 도로		전북고2012-56 ('12.3.23)	
9	소로	3	739	4	특수 도로	43 (43)	미원동 233-2 중로1-3	미원동 306 소로3-736	보행자 전용도로		전북고2012-56 ('12.3.23)	
10	소로	3	740	4	특수 도로	40	미원동 226 대로3-4	미원동 235-9 소로3-736	보행자 전용도로		전북고2012-56 ('12.3.23)	
11	소로	3	741	4	특수 도로	40	미원동 211 대로3-4	미원동 242-8 소로3-736	보행자 전용도로		전북고2012-56 ('12.3.23)	

② 주차장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1	68	주차장	미원동 337번지 일원	-	756	756	전북고2012-56 ('12.3.23)	
2	69	주차장	미원동 290번지 일원	-	675	675	전북고2012-56 ('12.3.23)	

③ 공공공지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1	13	공공공지	미원동 303번지 일원	-	1,711	1,711	전북고2012-56 ('12.3.23)	
2	14	공공공지	미원동 241-3번지 일원	-	825	825	전북고2012-56 ('12.3.23)	
3	32	공공공지	미원동 239번지 일원	-	532	532	전북고2014-71 ('14.3.21)	

바. 공동이용시설

① 경 로 당

구분	시설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1	경로당	군산시 미원동 302번지 일원	-	292	29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목적 공동이용시설 설치공간 • 공동체 활동증진 또는 지속적인 사회 경제적 정비를 위한 물리적 지원시설

② 화 장 실

구분	시설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1	화장실	군산시 미원동 236-8번지 일원	-	261	26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중화장실 설치로 인근주민에게 이용 편의 제공

③ 공동작업장

사. 관계도서 열람 : 군산시청 건축과 비치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건축과(☎ 454-33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시 제2015-3호

하천 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시행령 제38조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5. 1. 1

군산시장 (인)

주 소	전북 군산시 중동 272-5번지		
성명(법인명)	서해조선 (대표 여상복)		
하 천 명 칭	경포천	하 천 등 급	지방하천
점 용 장 소	전북 군산시 중동 271-1번지 외 4필지		
점 용 목 적	조선소(선가대) 운영을 위한 하천점용		
점 용 면 적	2,639㎡		
최 초 허 가 일	2014년 1월 1일		
점 용 기 간	2014년 1월 1일 ~ 2015년 6월 30일		

군산시 고시 제2015-4호

군산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군산C.C)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군산C.C)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인가 하고, 같은법 제9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관계도서는 군산시청(도시계획과 454-3532)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군 산 시 장

2015년 1월 2일

1. 사업시행지(변경없음) :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옥서면 옥봉리·선연리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
 - 2) 명 칭 : 군산 C.C 조성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1) 면 적 : 4,240,089㎡ (변경없음)
 - 2) 규 모 : 81홀(회원제 18홀, 대중제 63홀)
 - 3) 세부내용

구 분		총면적(㎡)	1~6단계(㎡) (완료)	7단계(㎡) (완료)	8단계(㎡)	비 고
총 계		4,240,089	3,571,637	24,540	643,912	
체육 시설	골프연습장	29,909	-	-	29,909	
	페어웨이 외	1,033,592	1,033,592	-	-	
건축 시설	지원용지	18,606	-	-	18,606	
	수 위 실	179	-	179	-	
	가스저장창고	150	-	150	-	
	클럽하우스 외	67,034	67,034	-	-	
공공 시설	골프장 주차장	60,913	46,597	-	14,316	
	오수처리장	1,742	700	1,042		
	관리도로	37,220	4,527	-	32,693	
	내부도로 외	134,504	134,504	-	-	
녹지 시설	복원녹지	1,044,163	847,118	2,946	203,457	
	원형보존녹지(구거)	1,582,140	1,207,628	20,223	344,931	
	원형보존녹지(임야) 외	229,937	229,937	-	-	

4. 사업시행자 (변경없음)

- 1) 사업시행자 주소 : 군산시 옥서면 옥봉리 1741번지
- 2) 사업시행자 성명 : 군산레저산업(주)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단계별 준공계획 변경

구분	1단계 ~ 6단계	7 단계	8 단계	비고
당초	81홀, 클럽하우스, 휴게소, 숙박시설 등 ('04. 06. ~ '11. 12)	복원녹지.구거 등 ('09. 10. ~ '13. 4.)	부대시설 ('09.10. ~ '14 12. 31)	1 ~ 7단 계 준공 8단계 변경
변경	변경없음	변경없음	부대시설 ('09.10. ~ '16. 12. 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등 : 게재 실음생략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8. 관계도서 : 게재 실음생략

군산시 고시 제 2015-5 호

도로명주소(부여·합병)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6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합병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 1. 2

군 산 시



○ 도로명주소 부여 : 42건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도 열 람				

○ 도로명주소 합병 : 1건

지번주소	합병된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도 열 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토지정보과(☎454-3983)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군산시 고시 제2015-6호

군산 도시계획시설(도로 및 공원)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도시계획시설(도로 및 공원)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관계도서는 군산시청(도시계획과 454-3532)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군 산 시 장
2015년 1월 2일

1. 사업시행지 : 군산시 지곡동 36-4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및 공원)사업
 - 나. 명 칭 :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어린이공원 조성공사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변경없음)

구분	노 선 명	시설결정		기 개설		금회 실시계획인가			비 고
		폭원(m)	연장(m)	폭원(m)	연장(m)	폭원(m)	연장(m)	면적(m ²)	
도로	대로2-11	30~33	990	30	344	3	75	193	확폭
	중로2-28	15~18	764	-	-	15~18	133.5	2,114	개설
	중로3-64	12~13	194	10	194	2~3	194	580	확폭
	소로2-60 3	8	194	7.5~8	194	0~0.5	30	55	확폭
공원	어린이공원 (제60공원)	1,560m ²		-		1,560m ²			

4.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가. 당초: 군산시 공단대로 248(수송동, 3층 301-1호) 지곡동현대엠코지역주택조합장 고세운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엔지니어링(주) 김위철
 - 변경: 군산시 공단대로 248(수송동, 3층 301-1호) 지곡동현대엠코지역주택조합장 정규성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엔지니어링(주) 김위철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당초 2012. 12 ~ 2014. 12. 31.
변경 2012. 12. ~ 2015. 03. 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게재실음 생략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게재실음 생략
8. 관계도서 : 게재실음 생략

○ 소로2-603

순번	위치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	옥산면 당북리	952-1	답	15	15	지곡동현대엠코 지역주택조합	전라북도 군산시 옥산면 월명로 51.201호				
2	옥산면 당북리	952-3	답	228	1	군산시					
3	옥산면 당북리	952-5	전	19	1	지곡동현대엠코 지역주택조합	전라북도 군산시 옥산면 월명로 51.201호				
4	옥산면 당북리	953-6	전	3	3	지곡동현대엠코 지역주택조합	전라북도 군산시 옥산면 월명로 51.201호				
5	옥산면 당북리	953-7	답	8	8	지곡동현대엠코 지역주택조합	전라북도 군산시 옥산면 월명로 51.201호				
6	옥산면 당북리	954-9	구	1	1	지곡동현대엠코 지역주택조합	전라북도 군산시 옥산면 월명로 51.201호				
7	옥산면 당북리	956-8	답	102	9	군산시					
8	옥산면 당북리	994-13	답	58	17	국(농수산부)					
계	8필지			434	55						

○ 어린이공원(제60공원)

순번	위치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	지곡동	42-11	답	30	30	지곡동현대엠코지역주택조합	전라북도 군산시 옥산면 월명로 51.201호				
2	지곡동	43-43	답	599	599	지곡동현대엠코지역주택조합	전라북도 군산시 옥산면 월명로 51.201호				
3	지곡동	46-2	도	3	3	지곡동현대엠코지역주택조합	전라북도 군산시 옥산면 월명로 51.201호				
4	지곡동	47-5	도	3	3	지곡동현대엠코지역주택조합	전라북도 군산시 옥산면 월명로 51.201호				
5	지곡동	47-6	도	33	33	지곡동현대엠코지역주택조합	전라북도 군산시 옥산면 월명로 51.201호				
6	지곡동	47-7	답	2	2	지곡동현대엠코지역주택조합	전라북도 군산시 옥산면 월명로 51.201호				
7	지곡동	47-8	답	240	240	지곡동현대엠코지역주택조합	전라북도 군산시 옥산면 월명로 51.201호				
8	지곡동	47-9	대	168	168	지곡동현대엠코지역주택조합	전라북도 군산시 옥산면 월명로 51.201호				
9	지곡동	48-1	도	190	190	군산시					
10	지곡동	48-19	전	260	260	지곡동현대엠코지역주택조합	전라북도 군산시 옥산면 월명로 51.201호				
11	지곡동	49-4	전	7	7	지곡동현대엠코지역주택조합	전라북도 군산시 옥산면 월명로 51.201호				
12	지곡동	49-5	전	25	25	지곡동현대엠코지역주택조합	전라북도 군산시 옥산면 월명로 51.201호				
계	10필지			1,560	1,560						

고시 제 2015 - 7호

소하천의 지정(변경·폐지)에 관한 고시

「소하천정비법」 제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소하천을 지정(변경·폐지) 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2일

군 산 시 장

수계(水系) 명	소하천명		소하천 구간		소하천의 총길이 (m)	지정(변경·폐지) 사유
			시작하는 지점	끝나는 지점		
경포천	옥산천	당초	옥산면 옥산리 249-7	옥산면 당북리 2-10	1,880	연장조정 (시점부 신규구간 추가)
		변경	옥산면 옥산리 682	옥산면 당북리 2-10	2,500	
탐천	운방천	당초	서수면 관원리 41-60	서수면 마룡리 1066-3	960	연장조정 (측량성과 반영)
		변경	서수면 관원리 41-60	서수면 마룡리 1066-3	600	
금강	둔기천	당초	나포면 옥곤리 399	나포면 옥곤리 958-3	1,460	연장조정 (중점부 배수로구간 제외)
		변경	나포면 옥곤리 399	나포면 옥곤리 1008	1,000	
금강	고상천	당초	나포면 장상리 475	나포면 장상리 908	590	연장조정 (합류부 유로변경 반영)
		변경	나포면 장상리 산394	나포면 장상리 908	730	
금강	수철천	당초	나포면 나포리 31-1	나포면 장상리 908	590	연장조정 (측량성과 반영)
		변경	나포면 나포리 31-1	나포면 장상리 908	930	

수계(水系) 명	소하천명		소하천 구간		소하천의 총길이 (m)	지정(변경·폐지) 사유
			시작하는 지점	끝나는 지점		
금강	옥동천	당초	나포면 나포리 451-1	나포면 장상리 908	570	연장조정 (측량성과 반영)
		변경	나포면 나포리 451-1	나포면 나포리 791-1	530	
금강	원장상천	당초	나포면 장상리 846-5	나포면 장상리 908	550	연장조정 (측량성과 반영)
		변경	나포면 장상리 846-5	나포면 장상리 908	510	
고척천	불곡천	당초	임피면 읍내리 157-2	임피면 읍내리 115-8	620	연장조정 (합류부 유로변경 반영)
		변경	임피면 읍내리 157-2	임피면 읍내리 219-8	704	
탑천	구곡천	당초	서수면 서수리 1379-3	서수면 서수리 1344-1	600	연장조정 (측량성과 반영)
		변경	서수면 서수리 1355-3	서수면 서수리 1416-10	980	
탑천	홍범2천	당초	서수면 축동리 201	서수면 축동리 145-1	500	연장조정 (측량성과 반영)
		변경	서수면 축동리 201	서수면 축동리 145-1	310	
금강	내외곤천	당초	나포면 옥곤리 174-2	나포면 옥곤리 577-1	750	연장조정 (종점부 신규구간 추가)
		변경	나포면 옥곤리 174-2	나포면 옥곤리 968	700	
금강	등동천	당초	나포면 옥곤리 382	나포면 옥곤리 282	530	연장조정 (측량성과 반영)
		변경	나포면 옥곤리 382	나포면 옥곤리 282	580	
금강	신기천	당초	나포면 옥곤리 386-1	나포면 옥곤리 399	730	연장조정 (측량성과 반영)
		변경	나포면 옥곤리 386-1	나포면 옥곤리 399	590	
금강	항동천	당초	성산면 성덕리 42-4	성산면 성덕리 63	1,030	연장조정 (측량성과 반영)
		변경	성산면 성덕리 42-3	성산면 성덕리 63	620	
고척천	산곡천	당초	성산면 산곡리 617-3	성산면 산곡리 226-4	950	연장조정 (시점부 신규구간 추가)
		변경	성산면 산곡리 617-3	성산면 창오리 192-2	1,760	

수계(水系) 명	소하천명		소하천 구간		소하천의 총길이 (m)	지정(변경·폐지) 사유
			시작하는 지점	끝나는 지점		
경포천	아산천	당초	개정면 아산리 89	개정면 옥석리 448-42	3,600	폐지 (농촌공사 배수개선사업중)
		변경	개정면 아산리 89	개정면 옥석리 841-1	-	
탑천	당골천	당초	-	-	-	지정 (금회 신규지정)
		변경	서수면 축동리 산202-1	서수면 축동리 374	990	
서해	흔옥천	당초	성산면 둔덕리 446-11	성산면 둔덕리 456	1,999	연장조정 (종점부 배수로구간 제외)
		변경	성산면 둔덕리 446-11	성산면 둔덕리 522	1,570	
서해	상흥천	당초	성산면 둔덕리 249-11	성산면 둔덕리 36-11	1,780	연장조정 (시점부 신규구간 추가)
		변경	성산면 둔덕리 250	성산면 둔덕리 19-5	2,200	
금강	신방천	당초	나포면 나포리 89-6	나포면 나포리 776	800	연장조정 (시점부 신규구간 추가)
		변경	나포면 나포리 산222	나포면 나포리 776	1,050	
탑천	수시천	당초	서수면 축동리 385-1	서수면 마룡리 662	3,190	연장조정 (시점부 신규구간 추가)
		변경	서수면 축동리 668-5	서수면 마룡리 846	3,480	
탑천	외무장천	당초	서수면 축동리 238-1	서수면 마룡리 846	1,740	연장조정 (시점부 신규구간 추가)
		변경	서수면 축동리 628	서수면 마룡리 846	2,390	
고척천	남산천	당초	임피면 보석리 384	임피면 보석리 400	690	연장조정 (측량성과 반영)
		변경	임피면 보석리 34-2	임피면 보석리 400	560	

군산시 고시 제 2015 - 9호

입산통제구역 지정·해제 고시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5년 산불조심기간 동안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을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일

군 산 시 장 (인)

1. 입산통제구역 지정·해제 목적

- 지정 목적 : 산불예방, 자연환경 보전 및 산림보호
- 해제 목적 : 상시 이용객이 많은 지역은 해제하여 합리적 이용 도모

2. 입산통제구역 지정·해제 현황

- 지정 현황 : 망해산외 4개산 / 604.52ha
- 해제 현황 : 오성산 / 141.41ha

3. 입산통제기간 : 산불조심기간

- 봄철 : 2015. 2. 1 ~ 5. 15 / 가을철 : 2015. 11. 1 ~ 12. 15

4. 지정 년월일 : 2014. 12. 31.

5. 통제구역의 입산방법

- 「산림보호법」 제15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 따라 입산허가 신청서를 군산시청에 제출하여 입산허가증을 교부받은 후 입산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 없이 입산 가능

- 1) 조림, 숲가꾸기, 사방, 벌채, 임도시설 등 산림사업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 2) 산불방지, 병해충 방제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 3) 군 및 예비군의 작전업무 수행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 4) 학술연구·자원조사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 5)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산림에 거주하는 주민이 일상 생업상의 목적으로 입산하는 경우
- 6) 성묘 및 분묘설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 7)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위원이 산림보호활동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 8) 「야생동·식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설정된 수렵장 내의 정당한 수렵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 9) 송배전 선로의 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 10) 문화재(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조사, 연구, 보존·관리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6.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산림보호법 제57조)

-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자
-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산림 소유자·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불을 놓은 자
-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
 - ▶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꽂초를 버린 자
 - ▶ 화기, 인화물질, 발화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자
-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자

7.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군산시청 산림녹지과 보호계(☎ 063-454-29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입산통제구역 현황 1부.
2. 입산허가 신청서 1부. 끝.

군산시 공고 제2014-1894호

군산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전 열람공고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19호선 2개노선)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전 열람을 실시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군 산 시 장
2014년 12월 19일

1. 공람기간 : 도보게재 다음 날로부터 14일간
2. 공람장소 : 군산시청 도시계획과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나. 명 칭 : 군산2차 현대엠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에 따른 도시계획도로(중로1-19호선 외 2개노선)개설공사
4. 사업의 위치

구 분	내 용	비 고
변경전	위치 : 군산시 옥산면 당북리 917번지 외 30필지	진출입로 변경 및 토지분할에 따른 면적정정
변경후	위치 : 군산시 옥산면 당북리 917-1번지 외 25필지	

5. 사업의 면적 및 규모

구분	노 선 명			결정조서		금회시행조서						비 고
						변 경 전			변 경 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	폭원	연장	면적	폭원	연장	면적	
도로	중로	1	19	20m	1,050m	20m	15m	301㎡	20m	160m	3,228㎡	진출입구간개설
	중로	3	70	12m	154m	12m	154m	1,837㎡	12m	154m	1,847㎡	전구간개설
	중로	2	138	15m	192m	15m	192m	2,743㎡	-	-	-	구역제척
계	2개노선			12~20	1,396m	12~20	361m	4,881㎡	12~20	314m	5,075㎡	

6.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 성명 : 군산2차 현대엠코 지역주택조합 대표자 전윤권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옥산면 월명로 51, 201호
- 성명 : 현대엔지니어링주식회사 대표자 김위철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엔지니어링(주)

7.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변경없음)

- 착공예정일 : 2013년 1월 2일
- 준공예정일 : 2015년 5월 31일

8. 사용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붙임조서 참조

9. 관계도서는 열람 장소에 비치하고 있으니 열람 기간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도시계획과 (454-35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 중로1-19호선

(단위 : m²)

순번	위치	변경전				변경후				증감	토지변경사항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	옥산면 당북리	935-1	답	774	236	935-8	답	515	234	감 2	935-1에서 분할	군산2차현대엠코지역 주택조합대표자 전용권	전라북도 군산시 옥산면 월명로 51,201호					
2	옥산면 당북리	938	전	813	65	938-1	전	222	60	감 5	938에서 분할		군산시 지곡동 42-5 도현해나지오아파트 101동 1405호					
3						916	답	539	538	증 538	신규편입	군산2차현대엠코지역 주택조합대표자 전용권	전라북도 군산시 옥산면 월명로 51,201호					
4						935-1	답	173	127	증 127	신규편입	군산2차현대엠코지역 주택조합대표자 전용권	전라북도 군산시 옥산면 월명로 51,201호					
5						935-3	도	9	9	증 9	신규편입	군산2차현대엠코지역 주택조합대표자 전용권	전라북도 군산시 옥산면 월명로 51,201호					
	김보덕	전라북도 군산시 구시장로 12(대명동)																
	홍정원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로63번길 10, 204동 606호																
												홍선희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앙로6길 5-15, 104동 208호(고척동, 청구아파트)					
6					936-3	도	36	34	증 34	신규편입	김보덕	군산시 대명동 138-28						
7					962-1	답	439	21	증 21	신규편입	강희철	옥구군 옥산면 당북리 910						
8					962-2	답	3,350	54	증 54	신규편입	강희철	옥구군 옥산면 당북리 910						
9					962-6	답	209	12	증 12	신규편입	강희철	옥구군 옥산면 당북리 910						
10					962-10	답	1,380	1,380	증 1,380	신규편입	군산2차현대엠코지역 주택조합대표자 전용권	전라북도 군산시 옥산면 월명로 51,201호						
11					962-12	답	685	685	증 685	신규편입	군산2차현대엠코지역 주택조합대표자 전용권	전라북도 군산시 옥산면 월명로 51,201호						
12					963	전	3	3	증 3	신규편입	군산2차현대엠코지역 주택조합대표자 전용권	전라북도 군산시 옥산면 월명로 51,201호						
13					994-14	도	487	71	증 71	신규편입	국(농수산부)							
계		2필지	1,587	301	13필지	6,872	2,469	증 2,927										

○ 종로3-70호선

(단위 : m²)

순번	위치	변경전				변경후				증감	토지변경사항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지번	지목	지적면적	면적	지번	지목	지적면적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옥산면 당북리	913-13	입	8,570	294	913-15	입	297	297	증 3	913-13에서 분할	군산2차현대엠코지역 주택조합대표자 전윤권	전라북도 군산시 옥산면 월명로 51.201호				
2	옥산면 당북리	917	답	2,620	75	917-2	답	69	69	감 6	917에서 분할	군산2차현대엠코지역 주택조합대표자 전윤권	전라북도 군산시 옥산면 월명로 51.201호				
3	옥산면 당북리	917-1	답	765	235	917-3	답	231	231	감 4	917-1에서 분할	군산2차현대엠코지역 주택조합대표자 전윤권	전라북도 군산시 옥산면 월명로 51.201호				
4	옥산면 당북리	918	전	850	312	918-1	전	315	315	증 3	918에서 분할	군산2차현대엠코지역 주택조합대표자 전윤권	전라북도 군산시 옥산면 월명로 51.201호				
5	옥산면 당북리	919-1	전	350	168	919-3	전	164	164	감 4	919-1에서 분할	군산2차현대엠코지역 주택조합대표자 전윤권	전라북도 군산시 옥산면 월명로 51.201호				
6	옥산면 당북리	919-2	전	493	22	919-5	전	31	31	증 9	919-2에서 분할	김세원	군산시 옥산면 당북리 922				
7	옥산면 당북리	934-2	대	516	1	934-7	대	1	1	-	934-2에서 분할	전우배	옥구군 옥산면 당북리 168				
8	옥산면 당북리	935-1	답	774	221	935-8	답	515	219	감 2	935-1에서 분할	군산2차현대엠코지역 주택조합대표자 전윤권	전라북도 군산시 옥산면 월명로 51.201호				
9	옥산면 당북리	935-3	도	162	90	935-11	도	91	91	증 1	935-3에서 분할	군산2차현대엠코지역 주택조합대표자 전윤권	전라북도 군산시 옥산면 월명로 51.201호				
												김보덕	전라북도 군산시 구시장로 12(대명동)				
												홍정원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로63번길 10, 204동 606호				
											홍선희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앙로6길 5-15, 104동 208호(고척동, 청구아파트)					
10	옥산면 당북리	935-4	도	172	20	935-12	도	21	21	증 1	935-4에서 분할	전우배	옥구군 옥산면 당북리 168				
11	옥산면 당북리	935-5	답	345	214	935-13	답	217	217	증 3	935-5에서 분할	군산2차현대엠코지역 주택조합대표자 전윤권	전라북도 군산시 옥산면 월명로 51.201호				
12	옥산면 당북리	935-6	답	309	79	935-15	답	82	82	증 3	935-6에서 분할	김창원	군산시 옥산면 당북리 942-1				
-	옥산면 당북리	938	전	813	1					감 1	구역제척						
13	옥산면 당북리	994-14	도	3,516	105	994-18	도	109	109	증 4	994-14에서 분할	국(농림수산부)					
계		14필지		15,617	1,652	13필지		1,952	1,656								

○ 종로2-138호선 : 구역제척

군산시 공고 제2014-1895호

군산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전 열람공고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138호선 외 2개노선)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전 열람을 실시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군 산 시 장

2014년 12월 19일

1. 공람기간 : 도보게재 다음 날로부터 14일간
2. 공람장소 : 군산시청 도시계획과
3. 실시계획인가 신청요지
 -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군산시 옥산면 당북리 940-4번지 외 36필지
 - 나. 사업의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2) 명 칭 : 군산 당북리 에스엠 아파트 신축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중로2-138호선 외 2개 노선) 개설공사
 - 다. 사업의 면적 및 규모

구분	노선명			결정조서		기개설조서		금회시행조서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개설폭원 (m)	연장 (m)	개설폭원 (m)	연장 (m)	면적 (㎡)	
도로	중로	2	138	15	192	-	-	15	192	2,743	확폭구간 개설
	소로	2	612	8	371	-	-	8	111	925	가각변경구간 개설
	소로	2	619	8	37	-	-	8	37	323	확폭구간 개설
계	3개노선			8~15	600	-	-	8~15	340	3,991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에스엠주택건설 주식회사 대표자 장길현
- 주소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오공로 43-7, 5층
- 성명 : 유한회사 디앤에스 대표자 유민섭
- 주소 :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안전로 151, 5층(대산빌딩)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15. 03. 02 ~ 2017. 08. 31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붙임조서 참조

4. 관계도서는 열람 장소에 비치하고 있으니 열람 기간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도시계획과 (454-35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중로2-138호선

순번	위치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 고
		본번	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 용	
1	지곡동	48	54	전	20	20	지곡동현대엠코지역 주택조합대표자 이용훈	전라북도 군산시 옥산면 월명로 51, 201호				
2	지곡동	48	56	대	5	5	신후상	군산시 지곡동 48-17				
3	지곡동	48	57	전	48	37	신후상	군산시 지곡동 48-17				
4	지곡동	49	8	전	337	337	이명순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북1로 107, 513동 1702호				
5	지곡동	49	10	전	1	1	국(재무부)					
6	지곡동	50	1	전	5	5	장애희	군산시 나운동 155-6 롯데아파트 303동 1302호				
7	옥산면 당북리	935	1	답	173	17	군산2차현대엠코지역주 택조합 대표자 전윤권	전라북도 군산시 옥산면 월명로 51, 201호				
8	옥산면 당북리	935	8	답	515	62	군산2차현대엠코지역 주택조합 대표자 전윤권	전라북도 군산시 옥산면 월명로 51, 201호				
9	옥산면 당북리	937	2	대	1	1	유덕순	군산시 옥산면 당북리 937-1				
10	옥산면 당북리	938	1	전	222	162	정재호	군산시 지곡동 42-5 도현해나지오 아파트 101동 1405호				
11	옥산면 당북리	940	4	전	252	252	안태호	전라북도 군산시 영동로 28-1(영동)				
12	옥산면 당북리	941	2	대	826	826	이용희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토렌스시 서부 164가 2404번지				
							이경현	미합중국 매리랜드주 엘리코트시 그로스벤들가 3700번지				
							이석희	전라북도 군산시 옥산면 당북리 947				
							이병희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동 157 양지 동산맨션 605호	이석희	전라북도 군산시 외당원길 99	근저당	
13	옥산면 당북리	941	6	대	101	101	안태호	전라북도 군산시 영동로 28-1(영 동)				
14	옥산면 당북리	942	20	대	7	7	장재혁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남로 209번길 6, 202호	군산농 업협동 조합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동 774	근저당 지상권	
							이명숙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141번길 21, 204호(갈미동 썬빌리 지)	이중재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서로 18, 202호(선화동)	근저당	
15	옥산면 당북리	942	21	대	122	122	장재혁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남로 209번길 6, 202호	군산농 업협동 조합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동 774	근저당 지상권	
							이명숙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이중재	대전광역시 중구	근저당	

순번	위치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 고
		본번	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 용	
								141번길 21, 204호(갈마동 썬빌리 지)		선화서로 18, 202호(선화동)		
16	옥산 면 당북리	943	3	전	420	420	이용희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토렌스시 서부 164가 2404번지				
							이경현	미합중국 매리랜드주 엘리코트시 그로스벤들가 3700번지				
							이석희	전라북도 군산시 옥산면 당북리 947				
							이병희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동 157 양지 동산맨션 605호	이석희	전라북도 군산시 외당원길 99	근저당	
17	옥산 면 당북리	944	1	묘	171	171	이선경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239, 1515호(비산동, 신안메트로 칸)				
18	옥산 면 당북리	945	6	묘	79	79	이명순	대구시 수성구 황금동 100 가든하 이즈 202동 1202호				
19	옥산 면 당북리	945	7	도	25	25	미등기					
20	옥산 면 당북리	947	4	대	22	22	이석희	전라북도 군산시 옥산면 당북리 947				
21	옥산 면 당북리	994	15	도	71	71	국(농수산부)					
계		21필지			3,423	2,743						

○소로2-612호선

순번	위치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 고
		본번	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	옥산면 당북리	945		대	647	70	이명순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북1로 107, 513동 1702호				
2	옥산면 당북리	945	1	묘	328	120	이명순	대구시 수성구 황금동 100 가든하이 츠 202동 1202호				
3	옥산면 당북리	946	1	대	102	42	에스엠주택건설주식회사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안전로 151, 5층(대산빌딩)				
4	옥산면 당북리	946	2	전	740	73	에스엠주택건설주식회사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안전로 151, 5층(대산빌딩)	주식회사 전북은행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6(금암동)	근저당	
5	옥산면 당북리	950	1	전	165	31	송화정	군산시 금광동 172 삼성아파트 7동 1211호	군산 산림조합	군산시 조촌동 841-13	근저당	
6	옥산면 당북리	950	2	대	119	59	국(재무부)					
7	옥산면 당북리	951	2	전	684	174	이명순	대구시 수성구 황금동 100 가든하이 츠 202동 1202호				
8	옥산면 당북리	951	3	전	221	51	이명순	대구시 수성구 황금동 100 가든하이 츠 202동 1202호				
9	옥산면 당북리	953	4	전	445	3	이명순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북1로 107, 513동 1702호				
10	옥산면 당북리	957	29	도	925	261	최인숙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20-43 반 포자이아파트 117-601	주식회사 국민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2가 9-1	근저당	
11	옥산면 당북리	957	32	답	303	1	최인숙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20-43 반 포자이아파트 117-601	주식회사 국민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2가 9-1	근저당	
12	옥산면 당북리	959	7	도	66	19	군산시					
13	옥산면 당북리	959	8	도	20	1	군산시					
14	옥산면 당북리	994	14	도	487	20	국(농수산부)					
계	14필지				5,252	925						

○ 소로2-619호선

순번	위치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 고
		본번	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	옥산면 당북리	956	14	도	864	133	군산시					
2	옥산면 당북리	957	29	도	925	174	최인숙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20-43 반 포자이아파트 117-601	주식회사 국민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2가 9-1	근저당	
3	옥산면 당북리	959	12	답	16	16	최인숙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20-43 반 포자이아파트				
계	3필지				1,805	323						

군산시 공고 제2015 - 2호

공 고

군산시 공인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공인폐기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1. 2.

군 산 시 장

- 1. 폐기공인등록 연월일 : 2015. 1. 2.
- 2. 폐기등록공인 및 인영(1점)

관수부서	공 인 명	인 영	재료	폐기사유
예술의전당 관리과	군산시시설관리사업소문화 회관관리과일상경비출납원 인		흑각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명칭변경